

COOL

원산지 라벨 표시 판매자 정보

COOL이란?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 원산지 라벨 표시)은 판매자가 "적용 대상 물품"이라고 부르는 특정 식품이 생산된 위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는 라벨 표시 법입니다.

COOL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소매점은 판매 시 소비자에게 COOL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총 \$230,000의 과일과 야채를 구매하는 소매상에게는 PACA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COOL에서 제외되는 대상

호텔, 레스토랑, 바, 선물집, 식품점, 샐러드 바, 농산물 직판장 또는 이와 유사한 즉석 섭취 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은 COOL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자의 책임

원산지 신고, 어류 및 조개류의 생산 방법은 통상적인 구매 조건에서 고객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알아보기 쉽게 배치해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는 눈에 잘 띠는 전제에서 타자로 치거나 인쇄하거나 또는 수기로 적을 수 있으며 다른 연방 라벨 표시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연방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라벨 표시 정보를 보기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판매 시 COOL 라벨 표시 옵션에 포함할 사항:

- 플래카드
- 스티커
- 철사끈
- 서명
- 끈
- 태그 핀

기록 관리 요구 사항

- 판매자는 바로 이전 공급자로부터 얻은 적용 대상 물품, 원산지, 생산

방법(해당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이름과 주소)를 밝히는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용된 기록은 출력된 자료 또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은 어느 위치에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USDA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COOL 적용 대상 물품이란?

적용 대상 물품은 판매 시점에 COOL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물품입니다. 여기에는 생/냉동 과일 및 야채, 양식/자연산 어류 및 조개류, 살코기 및 같은 닭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날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이 포함됩니다.

(뒷면에서 계속)

제외 물품이란?

가공 식품은 COOL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가공 식품은 적용 대상 물품에서 파생된 품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특성을 변화시키는 특정한 공정을 거침(예: 조리, 염지, 훈연, 재구성) 또는
2. 다른 적용 대상 물품 또는 실질적인 요소와 결합됨

가공 식품의 예:

- 데리야키 맛 닭고기
- 볶은 땅콩
- 빵가루를 묻힌 치킨 텐더
- 피시 핑거
- 해시 브라운
- 참치 통조림
- 혼합 채소
- 아루굴라와 어린 시금치 믹스
- 샐러드 키트
- 양념 마늘 새우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구 사항

살코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2016년도 옴니버스 지출법(Omnibus Spending Act)은 쇠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간 돼지고기에 대한 필수 COOL 요구 사항을 폐지하여 1946년의 농업 마케팅법을 개정했습니다.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물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산 살코기 닭, 양, 염소 고기 품목의 경우 라벨에는 "미국에서 출생/부화, 사육, 도살/수확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생산 단계를 거친 동물의 고기는 판매 시점에 생산 단계에 관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X 국가에서 출생, 미국에서 사육 및 수확" 또는 "X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 미국에서 도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육류의 원산지 신고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생산 단계가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 소매 판매 시점에 생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벨에 "X 국가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 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간 고기 제품에 대한 COOL 요구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국가를 나열해야 합니다. 특정 원산지의 원재료가 60일 이내로 가공업자의 재고에 있었던 경우 해당 국가는 원산지일 수 있으므로 라벨에 원산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부패성 농산품: 과일, 야채, 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

- 원산지 신고는 제품이 수확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 주, 지역 또는 특수한 현지 지명은 부패성 농산품의 원산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류 및 조개류

어류 및 조개류는 판매 시 원산지과 생산 방법(양식 또는 자연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 미국산은 미국에서 부화, 사육, 수확, 가공된 양식 어류와 조개류 또는 미국 내 수원에서 수확하거나 미국 국적 선박이 수확하고 미국에서 가공된 그리고 미국 외부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은 자연산 어류 및 조개류를 의미합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수입 어류 또는 조개류는 "X 국가산, 미국에서 가공" 또는 "X 및 미국 제품"으로 라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은 수입 어류나 조개류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신고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규정 준수

COOL 부서는 매년 수많은 소매자에게 감시 심사를 실시합니다. COOL 소매 심사 시 USDA 담당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판매 시 적용 물품에 원산지와 생산 방법 라벨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원산지와 생산 방법 신고는 판매자의 기록 관리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을 때 정확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COOL 비준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이메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COOL@ams.usda.gov

미국 농무부 농업 마케팅 서비스
Fair Trade Practices Program
Country of Origin Labeling Division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2614-S, STOP 0216
Washington, DC 20250
전화번호: (202) 720-4486
팩스: (202) 260-8369